성주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14년 7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제정이유

○ 성주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라 국민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원활하고 효과적인 운영 관리를 통해 최적의 시설을 제공하여 군민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 활동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주국민체육센터 운영 관련 내용

-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운영 시간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평 일 : 06:00 ~ 21:00, 토요일 06:00 ~ 18:00
 · 휴관일 : 매년 1월 1일, 설, 추석 연휴기간, 매주 일요일, 그외 국경일 또는 정부에서 지정한 공휴일

나. 사용허가의 우선 순위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다. 사용의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라. 강사 등의 근무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마.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바. 시설의 임대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3.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국민체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

다. 기　　타

- 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 규제심사 : 해당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 입법예고 : 의견없음(2014. 4. 23 ~ 2014. 5. 12(20일간)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성주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성주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건강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고 생활 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성주국민체육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본 시설의 명칭은 성주국민체육센터(이하 “센터”라한다)라 칭하고, 센터는 성주군 성주읍 성주순환로 271-15에 둔다.

제3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생활체육의 보급 및 진흥 육성사업
2. 건전 여가선용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3.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운영시설)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한다.

1. 체육시설 : 수영장, 체력단련실, 다목적실
2. 부대시설 : 사무실, 휴게실, 탈의실, 샤워장, 화장실, 관리시설(기계 및 전기실, 발전기실, 중앙감시실) 등

제5조(관리 및 운영)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 또는 관리요원을 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기단체 또는 생활체육 관련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민간 위탁 및 위탁 절차는「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및「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운영시간 등) ① 센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　일 06:00 ~ 21:00
2. 토요일 06:00 ~ 18:00

② 제1항의 운영시간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조정할 수 있다.

③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년 1월 1일
2. 설, 추석 연휴기간
3. 매주 일요일
4. 그 외 국경일 또는 정부에서 지정한 공휴일

④ 군수는 시설의 보수 및 점검 등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로 휴관할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 ① 센터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 또는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영장 및 체력단련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권을 교부 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④ 군수는 수영장 및 체력단련실의 상시 사용자를 위하여 월 사용권을 발부할 수 있다.

제8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2인 이상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체육경기 및 행사
3. 성주군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 등 관내체육단체의 행사
4. 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5. 직장 및 동호인 등이 참여하는 행사
6.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7.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및 공연행사 등

제9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용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위해한 행위를 하거나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
2. 장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3. 술 또는 약물에 의하여 심신을 상실한 자
4. 혼자서 자유로이 활동할 수 없는 자가 보호자 없이 입장하는 자
5.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제10조(사용료 등) ① 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대한 사용료 등을 시설물을 사용하기 전에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 등에 관한 규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사용의 연기) ① 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연기한다.
② 사용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신청할 경우 연기 할 수 있다.

제12조(강사 등의 근무) ① 군수는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시간제 수상안전요원, 수영 및 기타 강사 등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하는 외부시간제 수상안전요원, 수영 및 기타 강사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래강사와의 계약에 의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손해배상) ①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스스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활동 등으로 인하여 센터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4조(분실보상 책임) 개인 보관품 및 귀중품은 본인이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본인의 부주의로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센터에서 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5조(시설의 임대) ① 군수는 센터 시설 중 휴게실, 매점 등의 여유 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는「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6조(준용규정) 센터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 하고는「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및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성주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사용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민 숙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성주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준공에 따라 원활한 수영장 운영을 위한 각종 운영비(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의 확보가 필요함

2. 비용추계의 전제

- 성주국민체육센터 준공 후 개장(2014. 7월중)에 따른 운영비 등은 군비로 충당하여, 향후 매년 운영비가 소요될 예정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계
세입	○ 사용료 등	50,000	400,000	400,000	400,000	400,000	1,650,000
	소계(a)	50,000	400,000	400,000	400,000	400,000	1,650,000
세출	○ 운영비 등	455,284	650,000	700,000	700,000	700,000	3,205,284
	소계(b)	455,284	650,000	700,000	700,000	700,000	3,205,284
□ 총 비용(a-b)		-405,284	-250,000	-300,000	-300,000	-300,000	-1,555,284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계
국비							
도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시·군비		455,284	650,000	700,000	700,000	700,000	3,205,284
민간							
기타							
합계		455,284	650,000	700,000	700,000	700,000	3,205,284

5. 부대의견 : 없음

6. 작성자 : 문화체육과 지방행정주사보 홍순영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구 분		단가	사업량	연도별 사업비 내역						비고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 계		9.244.292	1식	3,205,284	455,284	650,000	700,000	700,000	700,000	
운영비	소계	455284		3,205,284	455,284	650,000	700,000	700,000	700,000	
	인건비	117,104		977,104	117,104	200,000	220,000	220,000	220,000	
	사무관리비	40,530		286,530	40,530	60,000	62,000	62,000	62,000	
	공공운영비	278,650		1,768,650	278,650	350,000	380,000	380,000	380,000	
	행사운영비	5,000		5,000	5,000	0	0	0	0	
	재료비	9,000		840,00	9,000	15,000	20,000	20,000	20,000	
	자산취득비	5,000		840,00	5,000	25,000	18,000	18,000	18,000	